

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설명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광진구 제3선거구 김영옥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-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2조에는 “새마을운동조직”에 대해 “그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”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.
- 현재 서울시에는 청년미래가치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자치구에 “청년새마을연대”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

- 전국적으로도 새마을운동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조직이나 미래세대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명시화하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위와 미래세대 계승을 위한 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